

광주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2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2.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3. C

4. D

5. E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350,724원과 그중 94,419,520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55,373원과 그중 101,345,243원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9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E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9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C는 2017.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20. 7. 14. 피고 D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E는 2020. 7. 14. 피고 C, D와 대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20. 10. 14.로,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4.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D는 2020. 7. 14. 피고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C, D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F조합은 2017.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G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1. 5. 4.을 기준으로 238,852,8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2020. 7. 14.)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C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2020. 11. 7. 및 2020. 12.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1. 3. 18. 및 2021. 3. 23. H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C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D 및 전득자인 피고 E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2) 피고 D, E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과 위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고, 피고 C의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라고 항변한다.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1003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D가 피고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게다가 피고 D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E가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D가 피고 C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피고 C가 피고 E에게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 C가 피고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C가 피고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됨에도,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이유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피고 E가 2020. 7. 14. 피고 C, D와 대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20. 10. 14.로,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4. 피고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증인 J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 D, E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9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E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0. 7. 14. 접수 제9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전라남도 장성군 임야 24,624㎡
- 이상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선분관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 C의 채권자이고, 피고 D, 피고 E는 피고 C와 공모하여 대물변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약의 수익자입니다.

2.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아래 H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신용보증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만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미이행 채무액에 대

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C는 각 연대보증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4 참조).

(단위: 원)

보증번호	보증금융기관	보증일	대출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과목	보증기간	보증금액		
K	H 은행 청단월계지점	2017-06-27	110,000,000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C
	거일은행 보증서대출	2018-06-26	99,000,000 (93,500,000)		
		2019-05-25			
		2020-06-25			
		2021-06-24			
L	H 은행 청단월계지점	2017-11-10	125,000,000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 C
	일반자금대출	2018-11-09	100,000,000		
		2019-11-08			
		2020-11-06			

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H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는 2020. 12. 4.경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갑 제3호증의 1 참조),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H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2020. 11. 7.경 원리금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2 참조).

(2) 이에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를 대위하여 2021. 3. 23. H은행에 94,419,520원을(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를 대위하여 2021. 3. 18. H은행에 101,345,2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다. 미수위약금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보증번호 L 보증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610,130원(요율 1.7, 대상기간 2020. 11. 7.부터 2021. 3. 17.까지 131일)입니다.

라. 채권보전비용(대지급금)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한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의 채권집행보전비용으로 931,204원을 대지급하였습니다.

마. 손해금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입니다(갑 제6호증 참조).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C는 연 대하여 원고에게 금 95,350,724원(대위변제금 94,419,520원 + 대지급금 931,204원)과 그 중 금 94,419,520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 C는 연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1,955,373원(대위변제금 101,345,243원 + 미수위약금 610,130원)과 그 중 금 101,345,243원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